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참고자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21. 2. 22.(월)	담당부서	원전산업정책과
담당과장	서기웅 과장(044-203-5320)	담 당 자	주현동 서기관(044-203-5326)

신한울 3·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'23.12월까지 연장

-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비용보전 원칙 고려,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 유지 필요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이하 "산업부")는 '21.2.22일 **신한울 3·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**을 한국수력원자력(이하 "한수원")이 신청한 **'23.12월까지 연장**했다고 밝혔다.

○ 산업부는 기간 연장의 취지를 **사업 재개가 아닌,**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**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**하고 **원만한 사업종결**을 위한 **제도마련 시**까지 한시적으로 **사업허가를 유지**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.

□ 한수원은 신한울 3·4호기 발전사업 허가 취득('17.2.27.) 후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법정 기한 내('21.2.27.) 공사계획인가를 받기 어렵게 되어 산업부에 **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'21.1.8일 신청**하였다.

○ **한수원**은 **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사유**로,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에 따라 건설허가 등 인허가 심사·승인 절차 중지로 기한내 공사계획 인가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,

- 기한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했음을 사유로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, 향후 **2년간 신규 발전사업허가 취득이 불가**하여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**확정설비용량 적기 확보가 곤란**하므로,

- 발전사업 허가 관련 별도 행정처분이나 **법령 제정 및 비용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이 마련**될 때까지 **발전사업 허가 유지가 필요**함을 밝혔다.

* 전기사업법(제12조) 상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간(신한울 3·4호기 : 4년)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산업부장관은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

□ 산업부는 한수원이 **귀책 사유 없이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신한울 3·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기한 내 받지 못한 것**이므로 전기사업법(제12조)에 의한 **사업허가 취소가 어려우며**,

○ 또한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인정됨에 따라 **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**하다고 판단하였다.

□ 한편, **공사계획인가 연장기간**에 대해서는 정부가 **에너지전환로드맵**('17.10)에서 밝힌 **적법·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 원칙**을 고려하고,

○ **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해 필요한 기간**을 고려하여 한수원이 신청한 **'23.12월까지로 판단**하였다.

□ 참고로 사업종결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**비용 보전**과 관련하여, **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**을 '20.9월 입법예고 하였고 법제처 심사·협의를 마치는 대로 **개정 후 시행**할 계획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주현동 서기관(☎ 044-203-532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